##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1. 11. 1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6호, 2021. 11. 11., 일부개정]

특허청 (심판정책과) 042-481-558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특허법」제139조의2,「실용신안법」제33조,「디자인보호법」제125조의2 및「상표법」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임기준 및 절차)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 )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11.>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나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- 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4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- 5.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
- 6.「병역법」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
- 7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
- 8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(「대・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)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
- 9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
- 10.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「특허법」제162조제3항,「실용신안법」제33조,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0조제3항 또는「상표법」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특허심판원장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11. 11.>
- ③ 특허심판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「특허법」제147조제1항,「실용신안법」제33조,「디자인보호법」제134조제1항 또는「상표법」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(「특허법」제15조제2항,「실용신안법」제3조,「디자인보호법」제17조제2항 또는「상표법」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1, 11, 11.>
-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3조(선임 취소 등)**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.
  - 1.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
  - 2.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  - 3.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  - 4.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  - 1.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2.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3.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.
  -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- **제4조(보수)**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, 구술심리(설명회)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.<개정 2021. 11. 11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운영)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